

제 8 편 부설기관

한국어교육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기관은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이하 “참교원”)이라 한다.

제 2 조(소재) 참교원은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 안에 둔다. 다만, 교육목적과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내외 분원을 둘 수 있다.

제 3 조(목적과 사업)

① 참교원은 해외동포 및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교육하여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참교원은 본 조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한국어 교육
2. 한국어 및 교육에 관한 연구
3. 한국어 교재 편찬 및 이에 관한 사업
4. 한국어 활용 및 전통문화 전수를 위한 각종 문화 행사

제2장 직제, 업무분장

제4조(원장, 부원장) ① 원장 : 대외적으로 참교원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참교원을 경영, 관리한다.

② 부원장 : 학교운영, 학생지도, 국제간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한다.

③ 지역여건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분원을 둘 수 있으며, 각 분원별 부원장 1인과 별도의 직제를 둘 수 있다.

제5조(행정조직) 행정조직으로 “행정지원팀”, “교학팀”, “상담팀”을 둔다.

제6조(행정지원팀) 행정지원팀은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연간사업계획 및 예산, 인사총무 관련업무
- ② 시간강사 위촉에 관한 업무
- ③ 홍보, 마케팅, 안내 및 외국인 수속 전반에 관한 사항
- ④ 외국인 유학생 국내 체류관련 업무
- ⑤ 원장 직인 관리
- ⑥ 기타 행정 제반 업무

제7조(교학팀) 교학팀은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교과내용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② 각종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업무
- ③ 수업 및 성적관리 업무
- ④ 기타 교학 제반 업무

제8조(상담팀) 상담팀은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학생 개인의 생활상담 및 신앙 상담
- ② 기숙사 방 배정 및 학생 기숙사 생활관리
- ③ 행정사항 협조
- ④ 기타 관련 제반 업무

제3장 인사·보수 및 재정

제9조(직원) ① 직원은 일반직과 계약직으로 구분된다.

② 원장은 각 행정부처에 적정수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강사) ① 강사는 전임강사와 시간강사로 구분된다.

② 강사의 임용 및 위촉 : 전임강사는 총장이 임용하며, 시간강사는 원장이 위촉한다.

③ 강사의 자격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1. 관련학과 졸업자 (국어국문학과, 한국어 교육학과 등)
- 2.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한국어 교사 2급, 3급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한국어 양성과정 140시간을 이수한 자.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참교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적정수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원장이 소집하고, 원장은 의장이 된다.

제12조(직원회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와 학생지도를 위하여 직원회의를 두고 원장이 의장이 된다.

제13조(인사 및 보수) 참교원 교직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간강사의 등급 및 시수는 학력과 경력에 따라 원장이 정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제14조(재정) 참교원의 재정은 학생의 등록금과 본교의 지원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4장 교육

제15조(교육내용)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의 전통사상을 교육한다.

제16조(교육과정) 참교원은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을 둔다.

- ① 한국어 초급 1 과정
- ② 한국어 초급 2 과정
- ③ 한국어 중급 1 과정
- ④ 한국어 중급 2 과정
- ⑤ 한국어 고급 1 과정
- ⑥ 한국어 고급 2 과정

제17조(학기)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 ①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②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18조(과정) 매년 2학기의 정규학습과정을 두며 필요에 따라 별도의 특별학습과정을 둘 수 있다.

제19조(재학기간) 재학기간은 1학기에서 2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4학기를 넘지 아니한다.

제20조(수업일수) ① 정규학습과정의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특별학습과정을 시행할 경우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학사

제21조(신입생 모집) 참교원의 신입생 모집은 정규학습과정 기준 매년 2회 실시하며, 특별학습과정을 둘 경우 해당과정의 신입생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제22조(신입생 선발기준 및 방법) 1. 선발기준 : 모집기간 내 입학원서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완납한 자 중에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발한다.

- 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
- ②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신적 건강 상의 이상이 없는 자.
- ③ 소속 교회가 분명한 자.
- ④ 범죄행위의 전과가 없는 자.
- ⑤ 한국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자.

2. 선발방법 : 선발 위원회가 원서접수를 마친 자 중에서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확정한다.

제23조(모집정원) 모집인원은 따로 정하지 않으며, 해당 학기 전에 학교시설과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정원을 정한다.

제24조(등록 취소와 등록금 반환) 등록취소를 하거나 개강 이후 학교를 포기(자퇴, 제적)하는 학생에게는 환불확인서<별지서식 1>를 받고 등록금을 반환해 주며, 등록금 반환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내용	반환기준	비고
개강이전 등록취소	· 원서접수비 : 반환 없음 · 등록금 : 100% 반환 · 생활관비 : 100% 반환	
수업기간 1/3선 수강이전 포기	· 원서접수비 : 반환 없음 · 등록금 : 2/3 해당액 반환 · 생활관비 : 포기일을 계산하여 나머지 숙박료와 식비를 반환	
수업기간 1/2선 수강이전 포기	· 원서접수비 : 반환 없음 · 등록금 : 1/2 해당액 반환 · 생활관비 : 포기일을 계산하여 나머지 숙박료와 식비를 반환	
수업기간 1/2선 수강이후 포기	· 원서접수비 : 반환 없음 · 등록금 : 반환 없음 · 생활관비 : 포기일을 계산하여 나머지 식비를 반환 (단, 기숙사비는 반환 없음)	

제6장 학적관리

제25조(시험) 시험은 매 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정규시험과 기타시험으로 한다.

제26조(성적평가) ① 점수는 “쓰기”, “읽기”, “듣기”, “말하기”, “출석/과제”의 5개의 평가항목과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시험으로 산정한다.

평가항목 시험종류	쓰기	읽기	듣기	말하기	출석/과제	총점	평균	성적
중간고사	100점 만점	100점 만점	100점 만점	100점 만점	100점 만점	500점 만점	100점 만점	F - A ⁺
기말고사	100점 만점	100점 만점	100점 만점	100점 만점	100점 만점	500점 만점	100점 만점	

② 성적은 본 조의 1항의 평균점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A⁺, A⁻, B⁺, B⁻, C⁺, C⁻, D⁺, D⁻, F의 총 9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평균 점수	등급
95 ~ 100	A ⁺
90 ~ 94	A ⁻
85 ~ 89	B ⁺

80 ~ 84	B ⁻
75 ~ 79	C ⁺
70 ~ 74	C ⁻
65 ~ 69	D ⁺
60 ~ 64	D ⁻
59점 이하	F

제27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기한 자퇴원서<별지서식 2>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한다.

1.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경우
2.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위배하여 원장으로부터 제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제29조(수료) ① 총 수업시간의 80% 이상 출석하고 성적이 D학점 이상을 받아야 수료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같은 급의 반에서 3회 이상 유급할 수 없다.

② 본 조의 제1항에 이상이 없는 수료자에게는 수료증 <별지 서식 3>을 수여한다.

제7장 장학금, 학생 포상 및 징계

제30조(장학금)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목회자 장학금 : 통일교회 전/현직 공직자또는 배우자 (목회자, 국가메시야, 대륙회장)
 - 등록금의 1/2 감면 (제정 2016.3.1.)
2. 목회자 및 청심 자녀 장학금 : 통일교회 현직 공직자 및 청심직원 자녀
 - 등록금의 1/3 감면 (신설 2016.3.1.)
3. 가족 장학금 : 한 가정에서 2인 이상이 입학할 경우 그중 1인
 - 등록금의 1/3 감면 (제정 2016.3.1.)
4. 대학원생 장학금 : 석/박사과정 재학 중인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 학생 (제정 2016.3.1.)
 - 등록금의 1/2 감면 (제정 2016.3.1.)
5. 풀타임 멤버 장학금 : 협회장 발령 풀타임 멤버
 - 등록금의 1/3 감면 (제정 2016.3.1.)
6. 근로 장학금 : 한 학기동안 60시간 근로시간을 이수할 수 있는 재학생
 - 최저임금에 의거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일정 시간(시간) 이수하여 지급 (제정 2016.3.1.)

② 장학금의 지급 또는 감면금액은 대학본부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한다.

③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 지급하지 아니하며, 1인이 2종 이상의 장학금 수혜 대상자인 경우 본인이 유리한 장학금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근로 장학금은 교내·외의 다른 장학금과 이중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제31조(포상) ① 성적우수자 : 중간고사/기말고사를 합한 한 학기 가장 성적이 우수한 학생

② 봉사상(반장) : 한 학기 동안 반장을 맡으며 수고한 학생

③ 봉사상(총장) : 한 학기 동안 기숙사 총장을 맡으며 수고한 학생

④ 위 포상 학생들은 수료식 때 상장과 함께 소정의 선물을 지급한다.

제32조(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원장이 경고, 정학 및 제적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절도, 이성문제, 흡연, 음주 등과 기타 품행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출석을 하지 않은 자.

③ 기타 학생의 본분을 위배한 자.

제8장 보칙

제33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법인정관 및 본교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1>

환 불 확 인 증																											
이 름		성 별																									
생년월일		국 가																									
현재상황																											
환불사유																											
환 불 세부내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0%;">납입내역</th> <th style="width: 20%;">납입금액 (원)</th> <th style="width: 20%;">환불금액 (원)</th> <th style="width: 4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접 수 비</td> <td></td> <td></td> <td></td> </tr> <tr> <td>등 록 금</td> <td></td> <td></td> <td></td> </tr> <tr> <td>생활관비</td> <td></td> <td></td> <td></td> </tr> <tr> <td>문화연수비</td> <td></td> <td></td> <td></td> </tr> <tr> <td>합 계</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납입내역	납입금액 (원)	환불금액 (원)	비고	접 수 비				등 록 금				생활관비				문화연수비				합 계			
납입내역	납입금액 (원)	환불금액 (원)	비고																								
접 수 비																											
등 록 금																											
생활관비																											
문화연수비																											
합 계																											
<p>본인은 위의 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금일 한국어교육 원으로부터 일금 _____ 원(W _____)을 환불 받았음을 확인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확인자 : _____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 부설</p> <p style="text-align: center;">참 부 모 언 어 교 육 원</p>																											

<별지 서식 2>

경유	도서관	결재	담당	원장

자 퇴 원 서

이름	(영문 : _____)		
국가		성별	
학번		외국인등록번호	
과정			
본국주소			
자퇴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자퇴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고자 : _____ ①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 부설

참 부 모 언 어 교 육 원 장

자퇴원서 접수증

이름 : _____ 학번 : _____ 외국인등록번호 : _____.

위 학생의 자퇴원서를 접수함.

200 년 월 일

접수자 : _____ ①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장**

<별지 서식 3>

수료번호 제 호

수료증

성 명 :

국 가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0000년 0학기 00학습과정에서 0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 한국어 0급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본 증을
수여함.

년 월 일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 부설

참 부 모 언 어 교 육 원 장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 운영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원은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 (이하“본원”)이라 칭한다.

제2조 (설립목적) 본원은 대학이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제공과 평생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원은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 내에 둔다.(개정 2016.03.01.)

제 2 장 조 직

제4조 (원장) ① 본원은 원장을 두며 전임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교직원) 본원은 필요한 직원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관장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6조 (구성) ① 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설치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
4. 학습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9조 (의결)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설치과정

제10조 (학습기간) 본원의 학습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습자는 수시로 모집한다.

제11조 (학습일수) 본원의 주 학습일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지원자격) 본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력·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선발방법) 본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설치과정 등) ① 본원의 설치과정 및 학습인원은 <별지 1>의 교육과정 편성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교육과정과 학습인원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 한다.

제15조 (학습비) ① 본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적용한다.

제16조 (수료 및 수료증 교부) ① 본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설치과정의 교과목을 70%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별지 2>을 교부한다.

제 5 장 학습자 활동 및 포상

제17조 (학습자 활동의 금지) 학습자는 본원 학습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18조 (포상) 학습 태도와 행실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수료시 포상할 수 있다.

제 6 장 회 계

제19조 (회계년도) 본원의 회계년도는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0조 (예산편성) 원장은 매년 12월 중 다음해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수입) 본원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수강료
2.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 보조금
3. 위탁훈련 지원금(위탁훈련시)
4. 기타 수입

제22조 (회계집행) 본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원에서 관장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3~4

<별지 1>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현황

<별도 기안>

<별지 2>

제 청삼-○○○ 호

수 료 증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 원장 ○○○ (인)

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 총장 ○○○ (인)

천일국연구원 규정(안)

제1조(명칭 및 설치) 천일국연구원(Cheon Il Guk Research Institute,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산하에 둔다.

제2조(목적) 연구원은 천일국 실체화에 필요한 학술 및 현장 연구를 수행하며, 특히 참부모님의 지시사항, 천일국경전의 이념, 천일국헌법의 이상 등을 구체화하여 비전2020과 천일국 실체화에 공헌하는 각종 연구들을 하게 되며, 아울러 섭리적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천지인참부모님의 가치, 생애, 업적 연구
2. 천일국 실체화에 필요한 학술 및 현장 연구: 천일국헌법, 천일국조직체계, 천일국인재개발 등
3. 정기 학술대회 및 강연회 개최
4. 국제 학술 교류
5. 그 밖에 연관사업

제4조(임원 및 임기) 연구원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비상임 연구위원과 연구원은 필요 기간 동안 활동한다.

1. 원장: 1명
2. 운영위원: 약간 명
3. 자문위원: 약간 명
4. 상임연구위원: 약간 명

제5조(원장) ①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직제 규정에 따라 임명한다.
②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전반을 총괄한다.

제6조(자문위원, 연구위원) ①자문위원은 본교 건학이념과 관련된 분야의 주요 인사들 중에 약간 명을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자문위원들의 효과적 활동을 위해 자문위원장을 둔다.
③연구위원은 상임 연구위원과 비상임 연구위원을 둔다.
④상임 연구위원은 건학이념에 대한 연구 활동 경력이 풍부한 본교 전임 교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의 소유자로서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비상임 연구위원은 연구원의 사업과 관련된 학문 분야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의 소유자로서 필요에 따라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연구원의 연구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2. 원장, 자문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위원회 위원이 된다.
3. 그 외 위원은 본교 건학이념에 대한 연구 활동 경력이 있는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의 소유자로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가. 연구원 사업에 관한 사항
 - 나. 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연구원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 라.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마. 연구 결과의 출판 및 보급 활용에 관한 사항
 - 바. 그 밖에 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재정) 연구원의 재원은 본교 지원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9조(예산 및 결산)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은 본교의 회계 연도에 따르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2015.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시행된 사항(임원 임명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영성치유연구소 규정

제1조(명칭 및 설치) 영성치유연구소(Cheongshim Research Center on Spirituality and Healing, 이하 "연구소"라 한다)은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산하에 둔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하나님, 참부모님을 대신한 천일국 지도자 양성을 위한 연구 수행과 지도자(영성치유사)보수 교육을 하고자 한다. 천일국 국민의 심정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천지인 참부모님의 생애 연구
2. 천지인 참부모님의 삶을 천일국 국민의 삶으로 연결하기 위한 실천적 분야 연구
3. 영성을 통한 자가 치유에 대한 연구
4. 연구소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대중화
5. 천일국 국민의 영성치유사 배출
6. 그 밖에 연관사업

제4조(임원 및 임기)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비상임 연구위원과 연구원은 필요 기간 동안 활동한다.

1. 소장: 1명
2. 운영위원: 약간 명
3. 자문위원: 약간 명
4. 상임연구위원: 약간 명

제5조(원장) ①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직제 규정에 따라 임명한다.
②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전반을 총괄한다.

제6조(자문위원, 연구위원) ①자문위원은 본교 건학이념과 관련된 분야의 주요 인사들 중에 약간 명을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자문위원들의 효과적 활동을 위해 자문위원장을 둔다.
③연구위원은 상임 연구위원과 비상임 연구위원을 둔다.
④상임 연구위원은 건학이념에 대한 연구 활동 경력이 풍부한 본교 전임 교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의 소유자로서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비상임 연구위원은 연구원의 사업과 관련된 학문 분야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의 소유자로서 필요에 따라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연구원의 연구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2. 원장, 자문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위원회 위원이 된다.
3. 그 외 위원은 본교 건학이념에 대한 연구 활동 경력이 있는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의 소유자로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가. 연구소 사업에 관한 사항
 - 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연구소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 라.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마. 연구 결과의 출판 및 보급 활용에 관한 사항
 - 바.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재정) 연구소의 재원은 본교 지원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9조(예산 및 결산)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은 본교의 회계 연도에 따르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시행된 사항(임원 임명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